

#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 조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1992. 11. 11

총무사회산업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년 11월 3일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2년 11월 4일

다. 상정일자 : 제20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종호)

가. 제안이유

방법원의 방법수당 가산제 도입과 의료업무수당의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필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에 의거 우리구 조례 내용을 개정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방법원의 방법수당 가산금제 도입 및 의료업무수당 인상

• 방법원의 방법수당 가산금제 도입

－ 현행 : 방법수당 월 40,000원

－ 개정 : 방법수당 월 40,000원 + 가산지급액

(공무원 임용 이전 자율방법 근무년수 인정)

## ○의료업무 수당인상

| 구 | 분 | 당 | 초        | 변        | 경  |
|---|---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|
| 전 | 문 | 의 | 554,000원 | 609,000원 | 이하 |
| 일 | 반 | 의 | 471,000원 | 518,000원 | 이하 |

## ○전임전문직공무원 의료업무 수당인상

| 등급별<br>근무년수별 | 가        |    | 나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|
|              | 당        | 초  | 변            | 경  |
| 5년 이상        | 880,000원 | 이하 | 월 1,012,000원 | 이하 |
| 4년 이상        | 875,000  | 〃  | 월 1,006,000  | 〃  |
| 3년 이상        | 870,000  | 〃  | 월 1,000,000  | 〃  |
| 2년 이상        | 865,000  | 〃  | 월 995,000    | 〃  |
| 2년 미만        | 860,000  | 〃  | 월 980,000    | 〃  |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○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의료공무원과 방법원의 보수가 현실화되어 이들에게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방법업무 및 의료업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| 질의위원  | 답변자         | 질의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답변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김형호위원 | 김종호<br>총무과장 | 구청장이 임명한 방법원이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방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인건비 지급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사유는? | 지금 27명의 방법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지방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경찰청 예산으로 인건비 지급은 불가능한 실정임. |

## 5. 토론요지 : 없음

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12명 전원찬성)